

「2025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사업」

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모집공고

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기업 및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3월 26일

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

1 사업 목적

- 육아휴직 대체인력 직접지원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, 인력난 해소 및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

2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전북특별자치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
- 접수기간 : 25. 4. 1. ~ 상시모집 *예산소진시까지
- 지원내용 : 도내 중소 제조업체(50인 미만)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근로자에게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
- 지원규모 : 140명 정도
- 지원금액 :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, 6개월 근속 시 100만원 추가 지급
- 신청방법 : 참여 희망 대체인력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이 신청
- 지급방법 :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
- 선정방법 : 지원 요건 적합성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선정

* 동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예정으로,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으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⇒ 신청시 ‘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통지서’ 제출 必

3 지원 대상[자격요건]

□ 지원대상 : 50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·파견된 근로자

- 사업장 요건

- 1)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중소기업
- 2)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혜기업
- 3) 1)과 2) 모두 충족하는 기업

※ 지원 제외대상 (참여자격 배제)

- ① 참여기업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인 기업
- ② 유흥·향락업 등 부적합 업체,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)
 -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출입·고용금지업소, 위생관리법 제2조, 풍속영업의 규제에관한법률 제2조,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(노래연습장업, 단란주점, 비디오물감상실업, 이 용업, 무도장업, 사행행위영업, 대여업, 복권발행업 등)
- ③ 공공기관, 복지기관(비영리기관), 민간위탁기관, 어린이집 등 국가·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 보조 대상자
- ④ 비영리 법인·단체·조합·협회 등
 - 민법·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·학교법인·의료법인·사회복지법인·재단법인·비영리특별법인(한국은행, 한국철도공사 등), 어린이집 등
- ⑤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예 :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- ⑥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
- ⑦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- ⑧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공기업
- ⑨ 「초·중등 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- ⑩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
- ⑪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- ⑫ 그 밖에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이나 업종(유흥주점, 무도장, 사행시설관리업 등)의 기업

- 근로자 요건 :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고용·파견된 근로자

※ 지원대상

- ① 근무개시 :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되어 고용·파견된 자
- ② 근무종료 : 2025년도 중 최소 3개월 이상 실근무
- ③ 거주지 : 근로자의 거주지는 무관
- ④ 국 적 : 외국인 지원 가능(단, F-2, F-5, F-6 고용보험 가입자)

※ 지원 제외대상(참여자격 배제)

- ①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2개월이 되는 날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
 - 2025. 7. 1.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경우, 2025. 5. 1. 이후부터 고용된 대체인력이 지원대상
- ② (협약일 기준) 참여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
- ③ 사업주 본인,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 등 관계에 있는 자
- ④ 당해 기업에서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자
- ⑤ (협약일 기준) 정부·지자체 등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
-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 -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(F-2), 영주(F-5), 결혼이민자(F-6)체류 자격자는 가능
- ⑦ 고용보험 미가입자
- ⑧ 본 사업 참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
 -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*에 참여중인 업무대행자 참여 제한
 - * (예시)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, 중앙-지방부처 인턴사업 등

4 신청 및 접수방법

- 접수방법 :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(www.jbok.kr)에서 신청
 - 회원가입 ▷ 기업지원사업 ▷ 분야별 지원사업 ▷ [2025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모집공고] ▷ 신청하기
- 지원심사
 - 1)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대상 근로자 확인
 - 2) 신청서류 기반 지원 요건 적격 여부 검토
- 구비서류 :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(www.jbok.kr)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(www.jbba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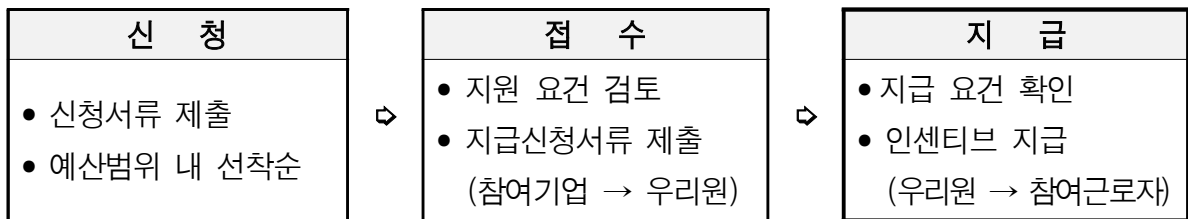
연번	신청시 제출서류(자격요건 및 3개월 근속 확인)	비고
1	지원금 신청서 1부	
2	확인서(기업용, 근로자용) 각 1부	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(기업용, 근로자용) 각 1부	
4	사업자등록증 1부	제조업체 확인용
5	중소기업 확인서 1부	
6	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1부	상시 근로자 수 확인용 *공고일 이후 발급
7	근로자 통장 사본	
8	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통지서	고용24에서 발급 가능 *고용24>기업로그인>마이페이지> 민원신청현황>조회>검색조건> 신청결과통지서
9	대체인력 근로자의 근로계약서	고용기간 확인용

연번	추가 제출서류(6개월 근속 확인)	비고
1	지원금 신청서 1부	
2	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통지서	고용24에서 발급 가능 *고용24>기업로그인>마이페이지> 민원신청현황>조회>검색조건> 신청결과통지서
3	대체인력 근로자의 근로계약서	고용기간 확인용

※ 기업 직인 날인 후 서류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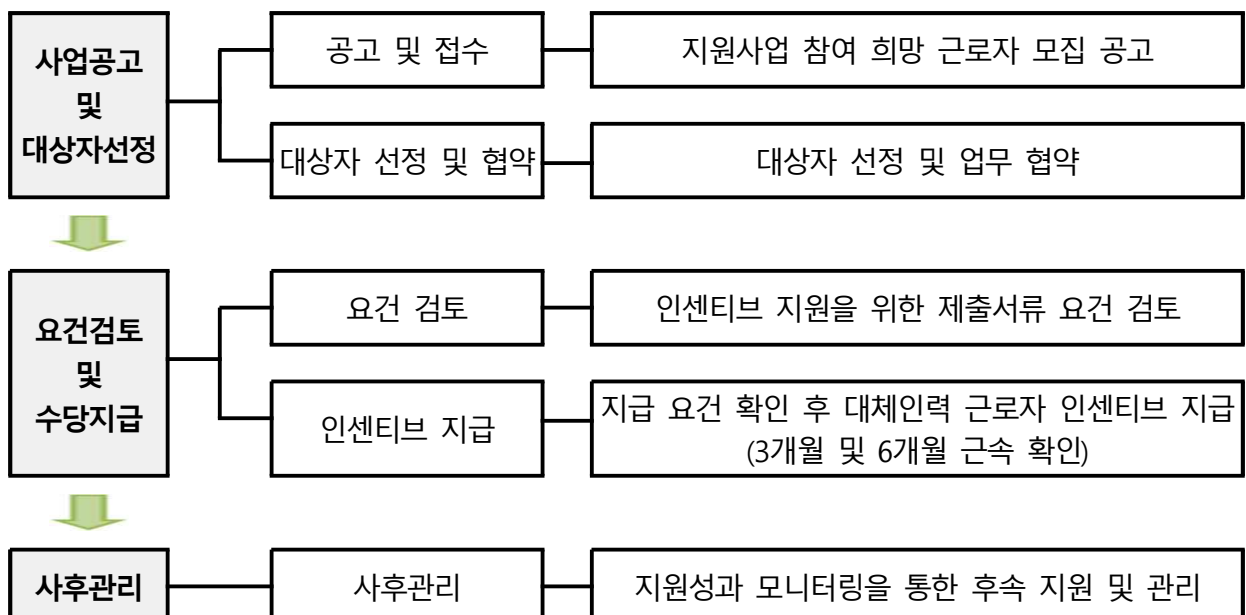
5 지원금 지급

- 지원기간 : 2025. 1. ~ 2025. 11.
- 지원규모 : 140명
- 지원금액 : 3개월 근속 시 100만원,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
- 지급방법 : 대체인력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(우리원→근로자)
- 지급방식 및 절차 : 지원요건 검토 후 대체인력 근로자에 지급



- 기타사항
 -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
 -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수혜 기업만 신청 가능
 -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시행일(2025. 1. 1.) 이후 대체인력으로 고용·파견된 근로자에 한해 예산범위 내 소급 적용 지원
 - * 육이휴직이 제도 시행일(2025. 1. 1.) 전에 시작되었어도 제도 시행일(2025. 1. 1.) 이후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 지원 가능
 - 3개월,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 지급
(예시) 2개월 10일간 근무 시 지원금 지급 불가

6 운영절차



7 유의 사항

-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,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해당 참여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,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(재)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본 사업은 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김영란법)”에 적용을 받고 있으므로,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☎063)711-2035 / asm@jbba.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자료

- [서식 1] 지원금 신청서
- [서식 2] 확인서(기업용)
- [서식 3] 확인서(근로자용)
- [서식 4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기업용)
- [서식 5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(근로자용). 끝.